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
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6. 1. 22.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6년 1월 16일

. 회부일자 : 1996년 1월 16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1회 임시회

. 제4차 내무위원회(1996. 1. 22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최 경 주)

가. 제안이유

-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
정원의 재조정과
- 충청북도산림환경사업소의 직제 등의 조정과 관련한 기관 명칭 및
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정원조례의 개정

- 본 청 : 942명 → 940명
- 의회사무처 : 58명 → 65명
- 사업소 : 380명 → 373명
- 출장소 : 231명 → 232명

○ 산림환경연구소조례의 개정

- 명칭변경 : 산림환경연구소 → 산림환경사업소
- 도유림사업소 폐지 → 산림환경사업소 이관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오 창 환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의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충청북도 산림환경사업소의 직제등의 조정과 관련한 기관명칭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

주요내용으로는

충청북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에 있어서

본청에 942명을 940명으로, 의회사무처 58명을 65명으로, 출장소 231명을 232명으로, 사업소 380명을 373명으로 그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

현행 조례와의 비교시 증원 또는 감축(본청 2명감축, 의회사무처 7명 증원, 출장소 1명 증원, 사업소 7명감축)으로 인한 감축정원에 따른 현원은 현원이 개정조례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의회사무처 정원의 증원과 관련된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중의 58명 조문은 65명으로 개정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었으며

또한 종전의 산림환경연구소의 기관명칭을 산림환경사업소로 그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사업소의 위치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83번지에 두되 도유림사업소의 업무이던 도유림 경영 및 보호관리와 휴양림조성관리업무를 신설하여 산림환경사업소 업무로 이관하여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, 치산사업 시행, 도유림의 경영과 보호관리등의 업무를 통합수행하도록 하는 등과 현행 조례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충청북도 산림환경사업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 개정함과 아울러 본개정안의 시행과 동시 현재 시행 적용되고 있는 충청북도 도유림사업소 설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본 개정조례안은 도 행정조기개편에 따른 정원의 재조정과 충청북도 산림환경사업소의 직제조정 및 기관명칭 변경과 사무내용을 신설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즉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도원안대로 의결(참석 8인, 찬성 8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.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
- . 신규 조문 대비표